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나9202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박세로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8.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653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편 피고는 갑 제6, 7, 9호증의 각 1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거의 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그러나” 이하의 4개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2, 4, 6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의 기재내역과 피고가 작성한 발주서, 원고와 피고 사이 및 피고와 피고의 거래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총액(27,815,000원)이 기재된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을 전송하였고 피고가 그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는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액 2,781,500원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그러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품목과 수량만을 정하여 발주서를 작성해주면 원고가 그에 따라 원사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내역서(거래처원장)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대금 액수를 통지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에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물품의 가격과 세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의 대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와 같이 정리한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며 “공급가 27,815,000원”이라고 알려준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알려주면서 공급가액과 그 10%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점(갑 제14호증), ④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781,500원(= 공급가액 27,815,000원 × 10%)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김용한, 판사 노태헌